

# 피난기준 이원화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Dualization of Evacuation Standards

구기경\*

Koo, Gi-Gyeong

### 요약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피난기준, 피난대책, 피난이동시간, 건축법규, 소방법규

## 1. 서론

피난은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방화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적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피난기준은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여러 관련법규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피난계획에 있어 근거법령이나 설치기준을 제시하거나 민원질의 소관부처를 특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건축법규에서의 피난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되는데 반하여, 소방법규에서의 피난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이외에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설치된다. 또한, 건축법규에서의 피난( $T_{escape}$ )은 건축초기단계부터 설치되는 구조체로서 피난이동시간( $T_{travel}$ )의 단축이라면 소방법규에서의 피난( $T_{escape}$ )은 건축준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기구나 설비로서 피난이동시간( $T_{travel}$ ) 이외에 피난지연시간( $T_{delay}$ ), 피난감지시간( $T_{detection}$ )의 단축이라 하겠다.

## 2. 본론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2.1 설치기준 중복

일례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설비의 경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향식피난구 승강식피난기(사다리)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설치되는 배연설비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 제연구역의 차압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 2.2 소관부처 이원화

피난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의 관리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난시설 기본설계단계에서 화재전담부서의 의견반영이 용이하지 않고 위험한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산업공학과 goodosa1@kakao.com

은 사례별로 답변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 2.3 법규별 상이한 명칭

「건축법」의 “기계식배연설비”와 「소방시설법」의 “제연설비”, 「건축법」의 “피난시설”과 「소방시설법」의 “피난구조설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드렌처”, “스프링클러”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의 “드렌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각 설비에 대한 명시된 정의가 없이 상이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 3. 결론

### 3.1 설치기준 일괄규율

여러 건축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구조체로서의 피난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설비로서의 피난기구나 설비는 소방법규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 3.2 소관부처 일원화

피난기준의 일괄적 규율에 따라 관련법규를 관할하는 소관부처에서 피난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의 Life-cycle를 주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3.3 법적명칭 통일

법규별 상이한 설비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각 설비별 설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치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